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99

발의연월일: 2022. 7. 28.

발 의 자:이용선·강득구·김병욱

김영호 • 김홍걸 • 문진석

서영석 • 유정주 • 유준병

이용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규정이 물류단지시설(창고나 점포)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바, 오피 스텔 등 지원시설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 물류 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의 지원시설까지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또한,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권한 이임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의 권한 이임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하며(안 제64조), 보조금, 과징금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8제3항, 제64조제6항).

법률 제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물류단지시설"을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로 한다.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 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고수리"를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	3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	
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u>체납처분의 예</u>
라 회수할 수 있다.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	①
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	
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u>물류단</u>	
<u>지시설</u> 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	
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	
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	
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 ② (생략)
- 제64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 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 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 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2. (생략)
 -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 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u>신</u>고수리

4. ~ 9. (생략)

- ④・⑤ (생 략)
-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 의 부과·징수권한이 시·도지 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21조

<u>.</u>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1. • 2. (현행과 같음)
3
시크스키 미 시크스키 서브
<u>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u> 통지
- <u>- ^ - 1</u> 4. ~ 9. (현행과 같음)
4. 5. (현 8기 달러) ④·⑤ (현행과 같음)
6
<i>⊌</i>

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기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지방
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u> 관한 법률 </u>